

예 산 총 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100,767,693	333,023,031
일반회계		9,962,208,899	298,866,267
특별회계		1,138,558,794	34,156,764
기타특별회계		1,138,558,794	34,156,764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250,000	7,5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3,783,610	1,313,508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900,000	297,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5,020,637	16,650,61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00,000	36,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680,412	170,412
	소방특별회계	522,320,135	15,669,604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404,000	12,120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039,26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6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